

## 선급금보증약관

**제1조 (보증책임)** 건설공체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은 계약자(이하 “채무자”라 한다)가 앞면 기재계약과 관련한 선급금채무(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경우에 한함)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(이하 “보증사고”라 한다) 그 상대방(이하 “보증채권자”라 한다)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**제2조 (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유)**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.

1. 천재지변, 전쟁,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변란으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2.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
3. 보증서를 보증목적(주계약내용)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
4. 보증기간개시전에 선금을 지급(어음교부 포함)하였을 때
5. 선금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로 지급한 경우 결제가 보증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
6. 선금을 임의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때
7. 제6조제2항 또는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

**제3조 (보증채무의 이행한도)** 조합이 이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채무자가 계약이행기일 이내에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선금해당액으로 합니다. 이 경우 채무자가 이행한 공사에 관한 미지급기성금이 있을 때에는 그 미지급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.

**제4조 (손해의 방지 및 경감의무)**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기간중 보증사고의 방지에 힘써야 하며,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.

②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합이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.

**제5조 (보증서의 효력상실)** 이 보증서의 보증채권자가 변경되거나, 주계약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이 보증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. 다만, 서면으로 조합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**제6조 (보증사고의 통지 및 보증채무의 이행청구)** ①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가 생긴 경우 이를 지체없이 조합에 알리고, 보증금청구시에는 보증금청구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. 보증서(또는 그 사본) 및 계약서 사본
2. 공사포기각서나 보증시공조치 또는 계약해제(해지)문서등 보증사고의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
3. 무통장입금증·영수증 등 선금과 기성금의 지급을 입증하는 서류
4. 공사 타결기성검사서 및 내역서
5. 기타 보증사고심사에 필요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서류

②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게을리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**제7조 (시공상황 및 보증채무의 확인조사)** ①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보증서에 기재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.

② 조합은 시공상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증채권자 또는 감리자에게 시공방법·공정·자재·대가지급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조합은 보증사고의 통지나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손해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④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증가된 채무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.

**제8조 (보증금 지급시기)** 조합은 보증금 청구를 받은 경우 보증채권자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한 서류를 정구하여 보증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, 보증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.

**제9조 (대위 및 구상)** ① 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며, 보증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집니다.

② 보증채권자는 제1항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의 구상권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조합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③ 조합은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제1항의 대위권에 의한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음을 금액중 그 위반으로 취득하지 못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**제10조 (양도 및 질권설정 금지)** 이 보증서에 의한 권리는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배한 경우 조합은 보증책임이 없습니다.

**제11조 (관할법원 및 준거법)** 이 보증에 관한 소송은 보증서를 발급한 조합의 영업점 또는 조합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중에서 보증채권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하며,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.